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9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최혁진
윤종오 · 손 술 · 용혜인
김준형 · 한창민 · 황운하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 없이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위탁 의존이 확대되면서, 폐기물 정책이 감축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처리시설 중심 정책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

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전환계획의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203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및 부칙).

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신설).

마. 관외 반입 시 협의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64조 및 제65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203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전단 중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을 “반입(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 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치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구조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이하 “처리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리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최근 5년 이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별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리 현황
3.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량적 목표
4. 감량 또는 공공처리시설 확충, 민간위탁 비용 등 폐기물 처리 방식별 환경영향 및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

5.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그 범위·기간·용량의 기준 및 정보공개 등 공공의 통제권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전환 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전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5(처리전환계획의 이행실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처리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리 현황

3.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대비 실적

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203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u>
<u><신 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
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
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
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신 설>

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반입(생활폐기물을 제
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라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협력금을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

<신 설>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 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치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전환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의 처리구조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이하 “처리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리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최근 5년 이상의 생활폐기물 발생

량 및 처리방법별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
리 현황

3.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
활용 확대를 위한 정량적 목
표

4. 감량 또는 공공처리시설 확
충, 민간위탁 비용 등 폐기물
처리 방식별 환경영향 및 사
회적 비용 비교 분석

5.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하는 경우 그 범위·기간·용
량의 기준 및 정보공개 등 공
공의 통제권 및 안전관리 확
보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전환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신 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5(처리전환계획의 이행실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처리전환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리 현황
3.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대비 실적
4.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4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8. (생략) 8의2. · 8의3. (생략) 9. (생략)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u>제1호</u>, <u>제6호</u> 및 <u>제11호</u>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1. ~ 11. (생략) 13. ~ 27. (생략)	----- ----- -----. 1. <u>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u>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의2. · 9의3. (현행 제8호의2 및 제8호의3과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65조(벌칙) ----- ----- ----- -----. -----<u>제2호</u> -----<u>제7호</u>-----<u>제12호</u>----- -----. 1. <u>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u> 2. ~ 12. (현행 제1호부터 제1호까지와 같음) 13. ~ 27. (현행과 같음)
--	---